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46
------	------

2022. 6.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5월 25일, 김소영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6.1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할당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투명성 제

고를 위해 공정한 사용기준과 예약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부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시민에게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제안된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우선 사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4항)
- 나. 목동 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함
(안 별표 3)
- 다. 뚝섬승마훈련원 관련 항목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별표1], [별표2], [별표3])
- 라. 시장이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체육시설 특정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4조제5항, 안 제15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 동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할당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 ·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9.10.)을 근거로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나.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안 제5조의2)

-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제4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u>

-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은 총 7개소로 시립 시설은 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유일하며 2021년도 기준으로 시설 이용자의 26.8%만이 장애인임.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

설립	시설명	자치구	주요시설	운영법인	개관일
시립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수영장(2),골프장,체육관,프로그램실,체력단련장 등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95.4.20
법인	서부재활체육센터	은평구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체력증진, 프로그램실 등	사복)엔젤스헤이븐	'02.12.2
	기쁜우리체육센터	강서구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사복)기쁜우리월드	'04.12.6
	동천재활체육센터	노원구	빙상장, 헬스장, 재활운동, 에어로빅실 등	사복)동천학원	'03. 5.1
	SRC재활체육관	경기광주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사복)에스알씨	'86.12.3
구립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마포구	수영장, 체육관, 장애인건강증진실, 상상누림터, 프로그램실	재)푸르메	'16. 5.1
	시각장애인축구장	송파구	축구장	송파구장애인체육회	'99.6.25

- 이러한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지역 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율이 50%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2021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시설명	총 이용자			장애인			장애인 이용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033,775	451,018	582,757	511,777	247,831	263,946	49.5%	54.9%	40.7%
서울곰두리체육센터	415,743	189,236	226,507	111,313	69,521	41,792	26.8%	36.7%	18.5%
서부재활체육센터	355,649	142,060	213,589	286,099	114,435	171,664	80.4%	80.6%	80.4%
기쁜우리체육센터	44,767	21,712	23,055	26,236	17,211	9,025	58.6%	79.3%	39.1%
동천재활체육센터	49,217	32,049	17,168	17,026	12,438	4,588	34.6%	38.8%	26.7%
SRC재활체육관	122,409	44,428	77,981	50,144	20,915	29,229	41%	47.1%	37.5%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41,582	17,671	23,911	17,707	10,401	7,306	42.6%	58.9%	30.6%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4,408	3,862	546	3,252	2,910	342	73.8%	75.3%	62.6%

- 일반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 이용을 데이터조차 없고 서울시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4.1%(2022년 2월말 기준)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재 등으로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2년 2월 말 기준 및 장애인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기타
인 원	391,378	167,240	40,079	41,113	59,943	27,384	55,619
비 중	100	42.7	10.2	10.5	15.3	7.0	14.0

※ '22년 2월 말 주민등록인구 : 9,732천 명(내국인 9,508천 명, 외국인 224천 명)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통계포털

- 최근에는 비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존 시립체육시설 이용을 장애인이 일정비율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실제 장애인의 이용 니즈(needs)가 높은 곳은 자치구 생활체육 센터인 바, 자치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자치구 조례에도 장애인 할당제를 명문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안 제4조제5항 · 안 제15조)

-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제5항에서 “시장이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에서 “체육시설 특정 장

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 하도록 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u>받아야 한다</u> .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 ----- ----- ----- <u>받되,</u> <u>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u> ----- -----.

- 이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의견 등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 ·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9.10.)을 근거로 제안되었음.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체육시설 내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를 하는데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술판이 벌어지는데 이는 명명백백한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위반임. (‘18. 10월, 국민신문고) ▪ 시설 이용시 이용수칙에 대해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가끔 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취식을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음. (‘19. 7월, 국민생각함) ▪ ‘19. 6. 11:00경 ○○시 ▽▽테니스장에서 회원들이 단체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는 현장 확인. (‘19. 6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또한 체육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없이 무분별하게 특정단체의 입간판·벽보·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사설체육시설로 오인하여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불만민원이 발생함.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의견 등〉

- 중앙공원 테니스장 입구에 ◇◇테니스클럽 입간판이 걸려 있는데 군민의 공동이용 시설물에 개인클럽의 입간판을 설치한 사유를 공개하고 철거할 필요가 있음. ('19. 3월, 국민신문고)
-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족구장, 프리테니스장 등 9곳이 특정 동호회들에 의해 독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동호회는 체육시설 앞에 동호회 이름이 적힌 간판을 내걸어두기도 함. ('19. 1월, 언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특정단체(동호회 등)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거나 시설 내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라. 공공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안 제5조제4항·안 제5조의2)

- 공공 체육시설에 특정 동호인단체의 독점사용을 예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일·시간)에 관한 적용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안 제5조(사용허가)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생략) <신설>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

- 안 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u>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u> 1. <u>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u> 2. <u>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u> 3. <u>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u> 4. <u>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u> 5. <u>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u>

	<p>6. <u>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u></p> <p>7. <u>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u></p> <p>② <u>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u></p>
--	---

- 현재 시립체육시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관심사를 진행하였고 세수입 증대를 위해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의 대관이 우선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음.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지만 공익성과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활용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마. 공공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제고(안 제5조제5항)

- 안 제5조(사용허가)제5항에서 체육시설의 예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u>시장은 개인정보 등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u>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체육시설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 시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단체(인)에게 장기간 사용 특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지 민원이 발생하였음.
- 사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공개하고, 동의 거부 시 시설이용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서울시설공단 돛경기장운영처(돛구장 축구장)의 경우 무단양도 및 불법예약(매크로 사용, 예약접속 IP)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법 행위 적발 시 축구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예약현황 공개를 통해 체육시설의 예약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체육시설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료 규정 현실화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잔디 교체로 인한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사용료) 제1항 관련 <별표3>).

< [별표 3] 전용 사용료 개정안 >

시설			현행			개정안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월드컵 경기장	보 조 경기장	1일	-	-	-	<u>232,000~</u> <u>301,600</u>	<u>350,000~</u> <u>455,000</u>	<u>560,000~</u> <u>728,000</u>
		2시간	197,000~ 256,100	295,000~ 383,500	472,000~ 613,600	<u>93,000~</u> <u>120,900</u>	<u>140,000~</u> <u>182,000</u>	<u>224,000~</u> <u>291,200</u>
목 동 운동장	주 경기장	1일	125,000~ 162,500	188,000~ 244,400	302,000~ 392,600	<u>170,000~</u> <u>221,000</u>	<u>256,000~</u> <u>332,800</u>	<u>409,000~</u> <u>531,700</u>
		2시간	50,000~ 65,000	75,000~ 97,500		<u>68,000~</u> <u>88,400</u>	<u>102,000~</u> <u>132,600</u>	<u>163,000~</u> <u>211,900</u>

(평일, 주간, 단위 : 원)

-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천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고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의 잔디 교체는 프로구단인 서울이랜드FC에서 목동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홈경기장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2022.9.~2026.2.))하기 위해 기존 인조잔디를 프로수준에 맞게 천연잔디로 교체(2021.9.~12.)함.
- 기존 목동 주경기장에서 실시하던 아마축구 경기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이전 개최하기 위해 기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2021.1.~10.)하는 것임.
- 잔디 교체로 인해 조성비와 관리비의 변동이 있어 시립체육시설 관람료 사용료 원가 조사용역(2021.10.)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전용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임.

〈 조성 및 유지비 증감〉

〈단위:백만원〉

구분	천연잔디	인조잔디	증감 (천연→인조)	증감 (인조→천연)
조성비	1,205	800	0.66	1.51
관리비	160	10	0.06	16

- 모든 경기장에 천연잔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리 운영비 등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프로축구 경기는 천연잔디를 사용하고 아마 축구 경기는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음.
- 비록 아마축구구단에서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멀쩡한 천연잔디 구장을 사

장시키고 인조잔디 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은 매물비용은 간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위탁운영 시설의 현행화

- 안 제16조(운영의 위탁)제2항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열거하고 있음. 그중 제4호 독섬승마훈련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로 향후 재개장될 가능성이 전무한 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독섬승마훈련원	제16조(운영의 위탁) _____ _____ 〈삭 제〉

- 또한 안 제2조(설치) 관련 〈별표1〉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서 독섬승마훈련원 란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사용료) 관련 〈별표2〉에서 1 개인연습사용료와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및 〈별표3〉 전용사용료에서 독섬승마장, 독섬승마훈련원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독섬승마훈련원	승마훈련원	승마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성수동1가 685-6)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승마장	뚝섬승마훈련원	성인·청소년	40,000~80,000(1시간)
		어린이	25,000~50,000(")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라. 뚝섬승마훈련원 (단위 : 원)

이용자	수강료	비 고
성인·청소년 및 어린이	300,000 ~390,000	1. 1일 1시간, 1개월 기준 2. 수강료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2의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를 적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뚝섬승마훈련원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 뚝섬승마장은 악취 등 민원문제로 2014년 12월 폐쇄되었고 대체부지 마련 등을 위해 노력 중인 바, 더 이상 활용 가능성이 없는 뚝섬승마훈련원을 조례상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아.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 조정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은 총 면적이 2면(1면 38m×17.9m)으로 중간 펜스와 같은 구분 시설은 없으나 1면만을 대관하여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거나 2면을 대관하여 연식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원가 산정 용역(2020.5.) 결과를 근거로 1면, 2시간 기준의 전용 사용료를 인상(3만원 ~ 3만9천원→ 8만 9천원 ~ 11만 5천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¹⁾함.
- 그러나 원가 산정 용역 결과는 2면의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나 1면에 대한 원가인 것으로 오인하여 사용료가 과다인상된 상태이며, 다목적 구장 풋살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2면을 이용하는 연식야구, 타볼경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2시간 기준 8만 9천원(최소)을 유지하고 1면을 이용하는 풋살경기의 사용료는 2시간 기준 현행 8만 9천원(최소)에서 4만 4천원(최소)으로 수정 의견을 드림.

< [별표 3] 전용 사용료 수정의견 >

현 행				수정의견			
(평일, 주간, 단위 : 원)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목동 운동장	다목적구장	89,000~115,700(1면, 2시간)		목동 운동장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비고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52,000원으로 한다.			비고	<삭 제>		

1) 의안번호 173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20년 8월 제출, 2020년 12월 상임위원회 상정되었고, 조례 개정 이후 전용사용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둠.

5.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시립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아마축구단이 사용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은 한국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천연잔디 구장에서 연습해야 하는 형편을 고려할 때 인조잔디로의 교체가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과다인상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요금을 감면시키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시립체육시설 중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전용 사용료가 원가산정 결과 적용의 착오로 과다인상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수정함(안 [별표3])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46
----------	---------

제안년월일 : 2022년 6월 1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립체육시설 중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전용 사용료가 원가산정 결과 적용의 착오로 과다인상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수정함(안 [별표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의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란 중 “89,000~115,700(1면, 2시간)”을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중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설		체육 경기	체육 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목 동 운동장	다목적 구장	<u>44,000~57,200(1면, 2시간)</u>		
		<u>89,000~115,700(2면, 2시간)</u>		
비고	9. <삭 제>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전용사용료				[별표 3] 전용사용료				[별표 3] 전용사용료					
시설		체육 경기	체육 행사	시설		체육 경기	체육 행사	시설		체육 경기	체육 행사	공연문화 예술 일반행사	
목 동 운동장	다목적구장	<u>89,000~115,700(1면,2시간)</u>		목 동 운동장	다목적구장	(현행과 같음)		목 동 운동장	다목적 구장	<u>44,000~57,200(1면,2시간)</u>			
비고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u>40,000~52,000원으로 한다.</u>			비고	9. (현행과 같음)			비고	<u><삭 제></u>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용허가)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 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중 “받아야 한다.” 를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뚝섬승마훈련원 (삭제)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제5조(사용허가) ① ~ 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u><신 설></u></p>	<p>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5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u></p> <p><u>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u> <u>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u>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뚝섬승마훈련원

5. ~ 11. (생략)

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

-----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히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육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실내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돐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돐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돐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육센터	성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수영장	성 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골프연습장	성 인	40,000~60,000					
	청소년	30,000~50,000					
올림픽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1,200	15,000 ~22,500	22,500 ~33,700	30,000 ~45,000	33,700 ~50,500	36,700 ~55,000
	청소년	5,600 ~8,400	11,200 ~16,800	16,800 ~25,200	22,400 ~33,600	25,200 ~37,800	27,400 ~41,100
	어린이	4,700 ~7,000	9,400 ~14,100	14,100 ~21,100	18,800 ~28,200	21,100 ~31,600	22,900 ~34,3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돛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 ~ 109,5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 ~ 109,500	
초·중·고반(주 3회)	88,000 ~ 132,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 ~ 21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 ~ 109,5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 23,100	30,800 ~ 46,200	46,200 ~ 69,300	61,600 ~ 92,400	69,300 ~ 103,900	75,400 ~ 113,100
	청소년	8,800 ~ 13,200	17,600 ~ 26,400	26,400 ~ 39,600	35,200 ~ 52,800	39,600 ~ 59,400	43,100 ~ 64,600
	어린이	8,200 ~ 12,300	16,400 ~ 24,600	24,600 ~ 36,900	32,800 ~ 49,200	36,900 ~ 55,300	40,100 ~ 60,100
체력단련장		44,000 ~ 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원)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 수영장	09:00~18: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00~12: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00~18: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301,600	350,000~455,000	560,000~728,000	
		2시간	93,000~120,900	140,000~182,000	224,000~291,2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위빙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m ²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A2		77,800~101,100				
A3		63,400~82,400				
A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불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221,000	256,000~332,800	409,000~531,700	
		2시간	68,000~88,400	102,000~132,600	163,000~211,9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